



<식료품점 철수로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>

‘식품 사막화’ 지역에서도 포장육·달걀 구매할 수 있습니다

-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 겪는 국민 불편 해소 위해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 개정 신속 추진
- 농어촌 등 축산물 구매편의 확보 및 영양섭취 불균형 해소로 국민 삶의 질 향상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^{*}이 냉장·냉동 차량으로 포장육^{**}(닭·오리의 식육 포함, 이하 같다)과 달걀을 이동·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을 8월 26일 개정·시행한다고 밝혔다.

*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앙회·조합

**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(세절·분쇄 포함)하여 포장 상태로 냉장·냉동한 것으로서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

이는 최근 산간벽촌·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^{*}에 대응하여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며, 식약처는 새 정부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.

* 전국 37,563개 행정리 중 음식료품 소매업이 해당 행정리 외에 위치한 경우^{**}는 73.5%('20년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, '21.12.)

** 사례 : 강원 춘천시 북산면의 경우 소매점까지 차로 한 시간 이상 소요, 전남 신안군 당사도(섬)의 경우 소매점까지 여객선·차량으로 한 시간 내외 소요

그간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부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했다.

앞으로는 식품 사막화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도 축산물(포장육·달걀)을 이동·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판매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.

먼저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포장된 ‘냉장·냉동 포장육’과 ‘냉장 달걀’을 이동·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다.

이동·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,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.

또한,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고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자(농협)를 이동·판매할 수 있는 주체로 선정했다. 향후 축산물 이동·판매의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판매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.

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.

아울러 축산물 이동·판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며,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김성일 (043-719-3240) 이성규 (043-719-3259)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	--

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

식품 사막화 OUT!

이제 신선한 축산물 내 집 앞에서 만나요!

산간벽촌, 낙도 등 **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**은
식품 이동 판매 차량에서 **축산물(포장육·냉장 달걀)** 구매가 가능해집니다.

냉장·냉동 시설 설치
식품 소매 점포
차량으로 영업

판매 품목

냉장·냉동 포장육 및 닭·오리의 식육, 냉장 달걀

판매 주체

식품 점포를 경영하는 농협 중앙회 또는 지역 농협

판매 지역인구소멸지역 등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 중
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